

공고 제 호

## 국민투표토론회 미개최 공고

년 월 일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대한 국민투표토론회를 「국민투표법」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년 월 일

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인

### □ 미개최 사항

대 상	개최예정일자	미개최 사유
국민투표토론회	○○○○.○○.○○.	참석하는 모든 정당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진 경우